

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21.

발의자 : 김도읍 · 장동혁 · 김석기  
박형수 · 양금희 · 조수진  
구자근 · 유상범 · 김성원  
김용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,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행업을 등록하거나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결격사유 중 “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”에 「형법」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

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제4호,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).

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끝나거나”를 “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 중 “끝나거나”를 “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4호 중 “끝나거나”를 “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,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.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<u>끝나거나</u>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1조의2(결격사유)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</p>	<p>제7조(결격사유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<u>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 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의2(결격사유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그 집행이 <u>끝나거나</u>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</p>	<p>----- <u>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 략)</p>	<p>-----</p>
<p>제22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.</p>	<p>제22조(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 --.</p>
<p>1. ~ 3. (생 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<u>끝나거나</u>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	<p>4. ----- ----- <u>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-</p>
<p>5. ~ 7. (생 략)</p>	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(생 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